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0991/8963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 KODEX 200 증권상장지수 투자신탁[주식]
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

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09.10.11 - 2010.10.10

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 한화증권,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동양종합금융증권, SK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제이피모간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, 크레디트스위스증권, 골드만삭스증권, 하이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리딩투자증권, 하나대투증권, 도이치증권, KTB투자증권, 엘아이지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0.04.12	제 2 조(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) 제 36 조(운용 제한) 제 48 조(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)	이 투자신탁은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① 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.	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① 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해당사항 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해당사항 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해당사항 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안진회계법인	1년	660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
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
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
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
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